위임장 (집합투자중권 및 연금저축계좌 투자용)

1. 대리인 정보

성 명	본인과의 관계	
생년월일	연 락 처	
주 소		

담 당	책임자	
인감 및 실명확인	(인)서명	
	(E/ATO	

2. 위임내용

신규	■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및 투자 성향 분석 결과 확인 본인은 본인의 투자성향을 잘 알고 있는 대리인에게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 등을 위한 투자자 정보확인서 작성을 위임하며, 이는 "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" 제46조2항 및 3항의 적합성 원칙 등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. - 본인의 투자목적,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판매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- 본인의 투자성향 파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-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행위		
			■ 투자자확인서 작성 ①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하나은행이 본인에게 적합한 집합투자중권을 권유(추천)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
	대리인의 판단과 본인의 책임으로 대리인이 지정하는 집합투자중권에 투자하는 것에 동의하며, 이와 관련한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 ②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 가입하는 경우 투자성향분석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에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대리인이 이에 따르지 않고 투자 위험 정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위험은 본인이 감수하게 됨을 확인합니다. ③ 본인에게 적정하지 않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상품 가입하는 경우 하나은행이 본인의 투자목적,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과 이와 관련한 투자의 위험성 및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판단과 본인의 책임으로 해당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에 동의하며, 본 거래의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	(인)	
기타	() ※ 신규 외 기타 위임거래를 구체적으로 명시	(인)	

※ 인감증명서 제출시는 동 증명서상 인감도장을 날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는 동 확인서상의 서명을 "(인)"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위의 대리인에게 집합투자중권 및 연금저축계좌의 거래에 있어 실명확인, 상품 가입과 관련한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에 대한 판단, 상품결정, 위험고지, 가입서류 작성, 제반 서류 사본 및 통장수령, 제신고, 해지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, 대리인의 행위와 관련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 에게 귀속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본인(위임인) 성명(법인명): 인(서명)

생년월일/사업자번호:

주 소:

연락처:

당행직원	가족에 의한 대리인 신규시 확인 사항	본인 앞 위임사실 확인함		
기재사항	(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,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	직위	직원명	(인/서명)



